

경기도 공고 제 2026-5970 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(영업정지)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 년 8 월 21 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 (기간)	처분사유	처분근거
(주)지호건설 (신현교)	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335번길 20 3층(신천동)	토목 공사업 (10-1820)	영업정지 4개월 (2026.9.18.~ 2027.1.17.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(기술능력) 미달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3 조제 3 호